

2025타경30256

청주지방법원 총주지원
경매1계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박대웅 소유물건(2025타경30256)

의뢰인: 청주지방법원 총주지원 사법보좌관
김영주

감정평가서번호: H3250124-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全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심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및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황창연

| | | | | | | |
|----------------|---------------------------------|-------------|------------|-------------------------|------------|--------------|
| 감정평가액 | 삼억구천구백삼십일만육천원정 (₩399,316,000.-) | | | | | |
| 의뢰인 | 청주지방법원 총주지원 사법보좌관 김영주 | | 감정평가 목적 | 법원경매 | | |
| 제출처 | 청주지방법원 총주지원 경매1계 | | 기준가치 | 시장가치 | | |
| 소유자 (대상업체명) | 박대웅 (2025타경30256) | | 감정평가 조건 | - | | |
| 목록표시 근거 | 귀 제시목록 | | 기준시점 | 조사기간 | 작성일 | |
| 기타 참고사항 | - | | 2025.02.06 | 2025.02.06 ~ 2025.02.06 | 2025.02.10 | |
| 감정 평가 내용 | 공부(公簿)(의뢰) | | 사정 | | 감정평가액 | |
| | 종류 | 면적(㎡) 또는 수량 | 종류 | 면적(㎡) 또는 수량 | 단가 | 금액 |
| | 토지 | 496 | 토지 | 496 | - | 129,952,000 |
| | 건물 | 400.94 | 건물 | 400.94 | - | 240,564,000 |
| | 제시외건물 | (252,1식) | 제시외건물 | 252,1식 | - | 28,800,000 |
| 합계 | | | | | | ₩399,316,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의 개요

1. 대상물건 개요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 소재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 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토지·건물)으로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경매1계에서 의뢰된 경매목적의 감정평가임.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가. 기준가치

본건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음.

나. 감정평가조건

없음.

3.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가. 본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관련 제 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감정평가하였음.

나. 본건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 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비교·검토하였음.

다. 본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 구조, 사용자재, 시공상태, 내구연한, 현상, 이용, 관리상태, 유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해 건물만의 거래가 극히 희소하여 정확한 건물가액의 추출이 어렵고, 건물만에 귀속되는 수익가치의 산출이 어려워 원가법 외의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주된 방법 외 다른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비교·검토는 생략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그 밖의 사항

- 가. 본건의 소재지, 지번 및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지적경계 등은 지적공부를 기준하여 목측에 의거 조사하였으니 정확한 지적 및 기타 관련사항 등의 확인 시 지적측량 등의 방법으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바람.
- 나. 본건 제시외 건물에 대한 평가는 구조, 규모, 사용용재, 시공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되, 감가수정은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고 면적은 개략적인 실측에 의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 다. 본건 건물의 각층에 소재하는 징크판넬 및 샷시조 창호의 비가림막 시설들은 건물의 부합물로 보아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5. 기준시점

- 가.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대상물건의 가격조사완료일인 2025년 02월 06일로 함.
-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실지조사(2025년 02월 06일)를 통하여 대상물건의 이용상황과 공부와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대상부동산의 개요

1. 토지

(공시기준일 : 2024년1월1일)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목 | 면적 (㎡) | 이용 상황 | 용도 지역 | 형상 | 도로 조건 | 개별지가 (원/㎡) | 비 고 |
|----------|--------------------------|----|-----------|----------|----------|-----------|-----------|---------------|-----|
| 1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 223 | 대 | 496 | 단독 주택 | 계획 관리 | 부정형 평지 | 세로 (가) | 108,400 | - |

2. 건물

| 일련 번호 |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 223 [도로명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상검단2길 26-14] | | | | | |
|----------|---------|--|--------|--------|---------------|-------|------------|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 | 용도 | 다가구주택 | | |
| 2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율(%) | 층수 (지하/지상) | 사용승인일 | 증축일 |
| | | 173.67 | - | 400.94 | - | -/3 | 1995.01.14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Ⅲ.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가. 비교표준지 선정 (공시기준일 : 2025.01.01)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중 감정평가 대상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공법상 제한사항, 주위환경, 지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음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함.

| 구분 | 소재지 | 면적 (㎡) | 지목 | 용도 지역 | 이용 상황 | 도로 교통 | 형상/ 지세 | 공시지가 (원/㎡) |
|-------|-----------|--------|----|-------|-------|--------|---------|------------|
| 표준지 A | 검단리 224-8 | 755 | 대 | 계획 관리 | 단독 주택 | 세각 (가) | 세장형 완경사 | 119,000 |

나. 시점수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며,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을 산정하여 적용하되, 기준시점 당시에 당해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 대상지역 | 기 간 | 지가변동률(%) | 보정치(배) | 비 고 |
|------------|-------------------------|----------|---------|-----------------|
| 충주시 '계획관리' | 2025.01.01 ~ 2025.02.06 | 0.148 | 1.00148 | 2024년 12월분 연장적용 |

다. 지역요인 비교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개별요인 비교

■ 주거지대[일련번호(1)/표준지A]

| 조 건 | 세 항 목 | 표준지 A | 일련번호 (1) | 비고 |
|---------------|--|-------|----------|-----------------|
| 가로 조건 | 폭, 포장, 보도, 계통의 연속성 | 1.00 | 1.00 | 유사함. |
| 접근 조건 |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인근상가와와의 거리 및 편의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 1.00 | 1.00 | 유사함. |
| 환경 조건 | 일조, 통풍 등,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등, 특별고압선과의 거리 | 1.00 | 1.00 | 유사함. |
| 획지 조건 |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 평지, 삼각지, 자루형 획지, 방위, 고저, 경사지, 각지, 2면 획지, 3면 획지 | 1.00 | 0.94 | 접면의 너비 등에서 열세함. |
| 행정적 조건 |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타 규제(입체이용제한 등) | 1.00 | 1.00 | 유사함. |
| 기타 조건 | 장래의 동향, 기타 | 1.00 | 1.00 | 유사함. |
| 개 별 요 인 비 교 치 | | 1.000 | 0.940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그 밖의 요인의 보정

1)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대법원판례(2003다38207, 2004.05.14.),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 등에 근거하여 인근 지역의 전반적인 가격수준과 인근지역의 감정평가전례를 참작하여 감정평가가격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장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자 함.

2) 감정평가전례 및 거래사례

① 감정평가전례

(출처: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화시스템)

| 기호 | 소재지 | 지목 | 용도지역 | 평가목적 | 기준시점 | 토지단가 (원/㎡) | 비고 |
|----|---------|----|------|------|------------|---------------|----|
| 1 | 검단리 *** | 대 | 계획관리 | 담보 | 2023.09.20 | 260,000 | - |
| 2 | 검단리 *** | 대 | 계획관리 | 경매 | 2023.11.30 | 173,000 | - |

② 거래사례

(출처: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자료)

| 기호 | 소재지 | 지목 | 용도지역 | 토지면적 (㎡) | 거래금액(원) | 토지거래단가 (원/㎡) | 거래시점 (계약일기준) |
|----|---------|----|------|-------------|-------------|-----------------|-----------------|
| ㉠ | 검단리 *** | 대 | 계획관리 | 356.4 | 107,000,000 | 300,224 | 2023.01.16 |

3)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① 사례선정

감정평가전례 및 거래사례 중에서 비교표준지와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 등 개별적 요인에서 비교가능성이 높은 평가전례 1을 그 밖의 요인 산정에 적용할 사례로 결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② 산출산식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사례 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③ 시점수정

| 대상지역 | 기 간 | 지가변동률(%) | 보정치(배) | 비 고 |
|---------------|-------------------------|----------|---------|--------|
| 충주시 '계획관리' | 2023.09.20 ~ 2025.02.06 | 3.031 | 1.03031 | 평가전례 1 |

④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 기호 | 사례단가 공시지가 | 시점 수정 | 지역 요인 | 개별요인 | | | | | | | 산정 가격 | 산정 보정치 |
|----|--------------|----------|----------|------|------|------|------|------|------|-------|----------|-----------|
| | | | | 가로 | 접근 | 환경 | 획지 | 행전 | 기타 | 격차율 | | |
| 1 | 260,000 | 1.03031 | 1.000 | 0.95 | 1.00 | 1.00 | 1.10 | 1.00 | 1.00 | 1.045 | 279,935 | 2.349 |
| A | 119,000 | 1.00148 | - | - | - | - | - | - | - | - | 119,176 | |

■ 비교표준지는 가로의 폭 등에서 열세하나, 형상 등에서 우세함.

⑤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 보 정 내 용 | 결정 보정치 | |
|---|--------|------|
| 감정평가전례, 거래사례, 인근지역 지가수준 및 대상토지의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함. | 표준지 A | 2.34 |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의 결정

| 일련 번호 | 표준지 공시지가 (원/㎡) | 시점수정 | 지역 요인 | 개별 요인 | 그 밖의 요인 | 산정단가 (원/㎡) | 결정단가 (원/㎡) |
|----------|----------------------|---------|----------|----------|------------|---------------|---------------|
| 1 | 119,000 | 1.00148 | 1.000 | 0.940 | 2.34 | 262,140 | 262,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가. 거래사례 선정

① 선정기준

토지만의 거래가액이 분리 가능한 거래사례로서 동일 유사 수급권 내의 실거래가 중 용도 지역, 실제이용상황, 공법상 제한,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있는 거래사례 ㉠을 선정함.

② 거래사례 내역

(출처: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자료)

| 기 호 | 소재지 | 지목 | 용도 지역 | 토지면적 (㎡) | 거래금액(원) | 토지거래단가 (원/㎡) | 거래시점 (계약일기준) |
|--------|------------|----|----------|-------------|-------------|-----------------|-----------------|
| ㉠ | 검단리 *** | 대 | 계획 관리 | 356.4 | 107,000,000 | 300,224 | 2023.01.16 |

나. 사정보정

선정된 거래사례에는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도의 사정보정을 하지 아니함(1.000).

다. 시점수정

| 대상지역 | 기 간 | 지가변동률(%) | 보정치(배) | 비 고 |
|---------------|-------------------------|----------|---------|---------|
| 충주시 '계획관리' | 2023.01.16 ~ 2025.02.06 | 3.890 | 1.03890 | 실거래사례 ㉠ |

라. 지역요인 비교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개별요인 비교

■ 주거지대[일련번호(1)/거래사례㉠]

| 조 건 | 세 항 목 | 거래사례 ㉠ | 일련번호 (1) | 비고 |
|---------------|--|-----------|-------------|----------------------|
| 가로조건 | 폭, 포장, 보도, 계통의 연속성 | 1.00 | 1.00 | 유사함. |
| 접근조건 |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인근 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 1.00 | 1.00 | 유사함. |
| 환경조건 | 일조, 통풍 등,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등, 특별고압선과의 거리 | 1.00 | 1.00 | 유사함. |
| 획지조건 |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 평지, 삼각지, 자루형 획지, 방위, 고저, 경사지, 각지, 2면 획지, 3면 획지 | 1.00 | 0.85 | 형상 및 접면의 너비 등에서 열세함. |
| 행정적 조건 |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타 규제(입체이용제한 등) | 1.00 | 1.00 | 유사함. |
|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기타 | 1.00 | 1.00 | 유사함. |
| 개 별 요 인 비 교 치 | | 1.000 | 0.850 | - |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의 결정

| 일련 번호 | 거래사례단가 (원/㎡)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 요인 | 개별 요인 | 산정단가 (원/㎡) | 결정단가 (원/㎡) |
|----------|-----------------|-------|---------|----------|----------|---------------|---------------|
| 1 | 300,224 | 1.000 | 1.03890 | 1.000 | 0.850 | 265,117 | 265,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토지 감정평가액 결정

가. 시산가액

| 일련번호 |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원/㎡)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원/㎡) | 결정단가(원/㎡) |
|------|-----------------------|-----------------------|-----------|
| 1 | 262,000 | 265,000 | 262,000 |

나. 시산가액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상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을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다.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

| 일련번호 | 소재지 | 면적(㎡) | 토지단가(원/㎡) | 감정평가액(원) |
|------|-----------------------|-------|-----------|-------------|
| 1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 223 | 496 | 262,000 | 129,952,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대상건물의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재조달원가 산정

가. 건물표준단가

※ 한국부동산연구원 건물신축단가표(2023년)

| 분류번호 | 용도 | 구조 | 급수 | 표준단가 (원/㎡) | 내용연수 |
|-------------|------|-------------|----|---------------|---------------|
| 01-05-05-09 | 일반주택 | 철근콘크리트조/평지붕 | 3 | 1,640,000 | 50 (45~55) |
| 01-05-05-09 | 일반주택 | 철근콘크리트조/평지붕 | 4 | 1,434,000 | 50 (45~55) |

나. 재조달원가 결정

건물의 재조달원가는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상의 표준단가를 토대로 대상 건물의 시공의 정도, 관리 및 이용상태, 유지·보수의 정도,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일련 번호 | 층 | 건물의 구조 | 시공의 정도 | 마감재 수준 | 관리상태 및 현상 | 적용 재조달원가 (원/㎡) | 비고 |
|----------|-----|----------|-----------|-----------|--------------|----------------------|--------|
| 2 | 1~3 | 철근콘크리트구조 | 중 | 중 | 하 | 1,500,000 | 부대시설포함 |

다. 감가수정 및 건물단가의 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감가수정시 대상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을 적용하였음.

| 일련 번호 | 층 | 재조달원가 (원/㎡) | 내용 연수 | 잔존 내용연 수 | 산정단가 (원/㎡) | 결정단가 (원/㎡) | 사용승인일 |
|----------|-----|----------------|----------|----------------|---------------|---------------|------------|
| 2 | 1~3 | 1,500,000 | 50 | 20 | 600,000 | 600,000 | 1995.01.14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대상건물의 감정평가액

| 일련 번호 | 층별 | 면적(㎡) | | 적용단가 (원/㎡) | 감정평가액 (원) | 비고 |
|----------|----|--------|--------|---------------|--------------|----------------|
| | | 공부 | 사정 | | | |
| 2 | 1층 | 173.67 | 173.67 | 600,000 | 104,202,000 | 다가구주택 (5가구) |
| | 2층 | 173.67 | 173.67 | 600,000 | 104,202,000 | 다가구주택 (8가구) |
| | 3층 | 53.60 | 53.60 | 600,000 | 32,160,000 | 다가구주택 (3가구) |
| 합 계 | | 400.94 | 400.94 | - | 240,564,000 | - |

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상기와 같이 대상물건의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고 감정평가목적에 고려하여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은 원가법을 사용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구분 | 적용단가 (원/㎡) | 사정면적 (㎡,수량) | 감정평가액 (원) | 비고 |
|--------|---------------|----------------|--------------|--------------------------------|
| 토지 | 262,000 | 496 | 129,952,000 | 상세내역은 후첨 “감정평가명세표” 참조 |
| 건물 | - | 400.94 | 240,564,000 | |
| 제시외 건물 | - | 252, 1식 | 28,800,000 | |
| 합 계 | | | 399,316,000 | - |

끝.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 목 및 용 도 | 용도지역 및 구 조 | 면 적 (㎡) | | 감 정 평 가 액 | | 비 고 |
|------------|--|-------------|---------------------|--|-----------------------------------|--------|-----------|-----------------------|----------------------|
| | | | | | 공 부 | 사 정 | 단 가 | 금 액 | |
| 1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 | 223 | 대 | 계획관리지역 | 496 | 496 | 262,000 | 129,952,000 | |
| 2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상검단2길 26-14 | 223 위 지상 | 주택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1층 2층 3층 | 173.67 173.67 53.60 | 400.94 | 600,000 | 240,564,000 | 1,500,000 x 20/50 |
| 소 계 | | | | | | | | ₩370,516,000 | |
| 2-1 | <제시외 건물>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 | 223 위 지상 | 창고 (1층 옆) | 판넬조 | (6) | 6 | | 900,000 | 관찰감가 |
| 2-2 | 동 소 | 상 동 | 창고 (3층 위) | 판넬조 | (6) | 6 | | 900,000 | 관찰감가 |
| 2-3 | 동 소 | 상 동 | 지붕 (3층 위) | 각관조 철판넬 | (240) | 240 | | 18,000,000 | 관찰감가 |
| 2-4 | 동 소 | 상 동 | 태양광 발전 (3층 위) | 12KW 설비일체 | (1식) | 1식 | | 9,000,000 | 관찰감가 |
| 소 계 | | | | | | | | ₩28,800,000 | |
| 합 계 | | | | | | | | ₩399,316,000.- | |
| | | | | 이 | 하 | 여 | 백 | |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 소재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평지로 다가구주택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3m 내외의 현황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09-20)(한국교통대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건물의 구조 | (2) 이용상태 | (3) 설비내역 |
|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로서,
외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및 벽돌쌓기 마감등임.
내벽 : 벽지도배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등임.
창호 : 샷시 창호등임.

(2) 이용상태

1층 : 다가구주택(5가구)으로 이용중임.
2층 : 다가구주택(8가구)으로 이용중임.
3층 : 다가구주택(3가구)으로 이용중임.
현장조사시 2층 201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수는 공실인 것으로 탐문조사되었음.

(3)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및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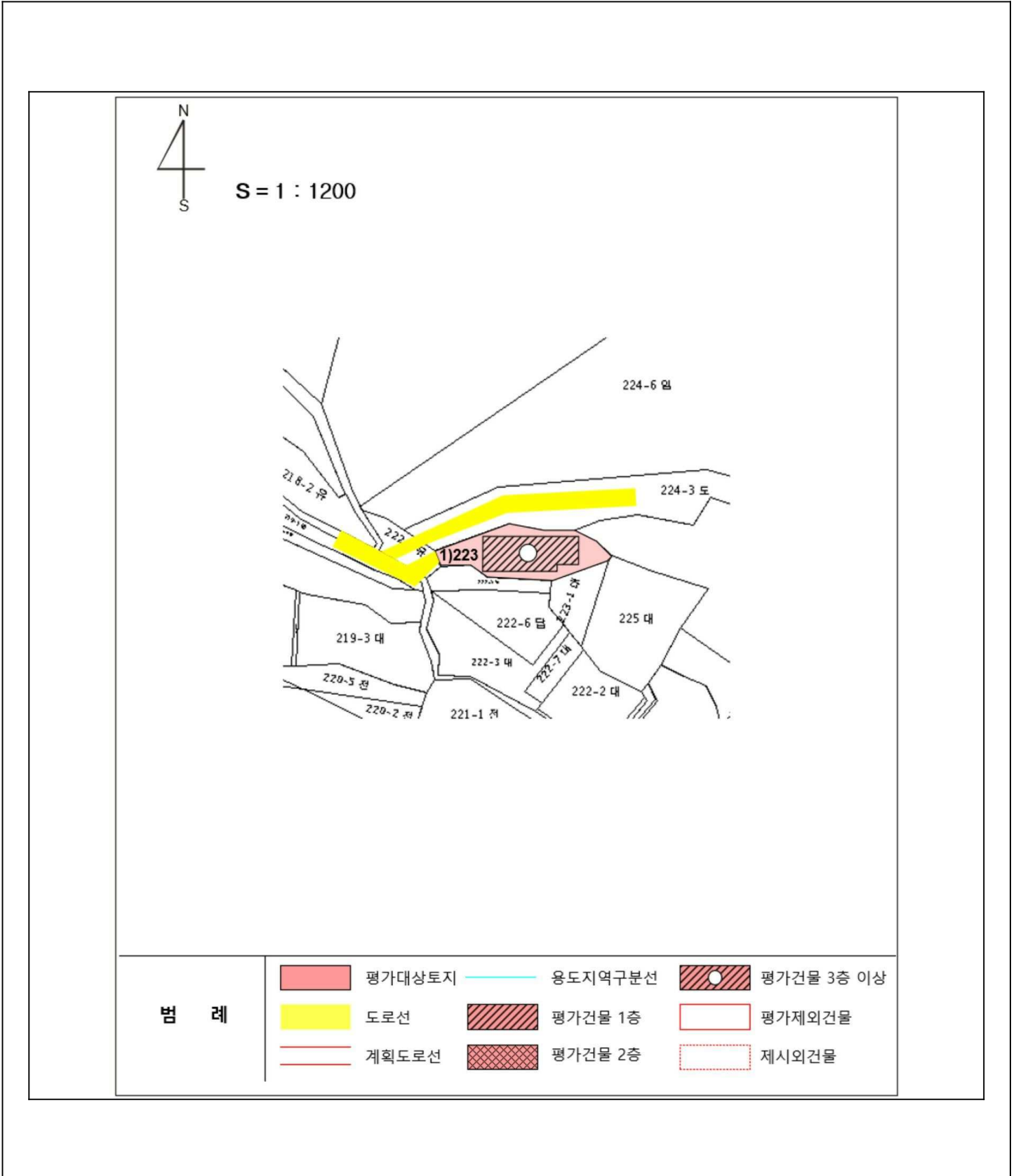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건물감정평가요항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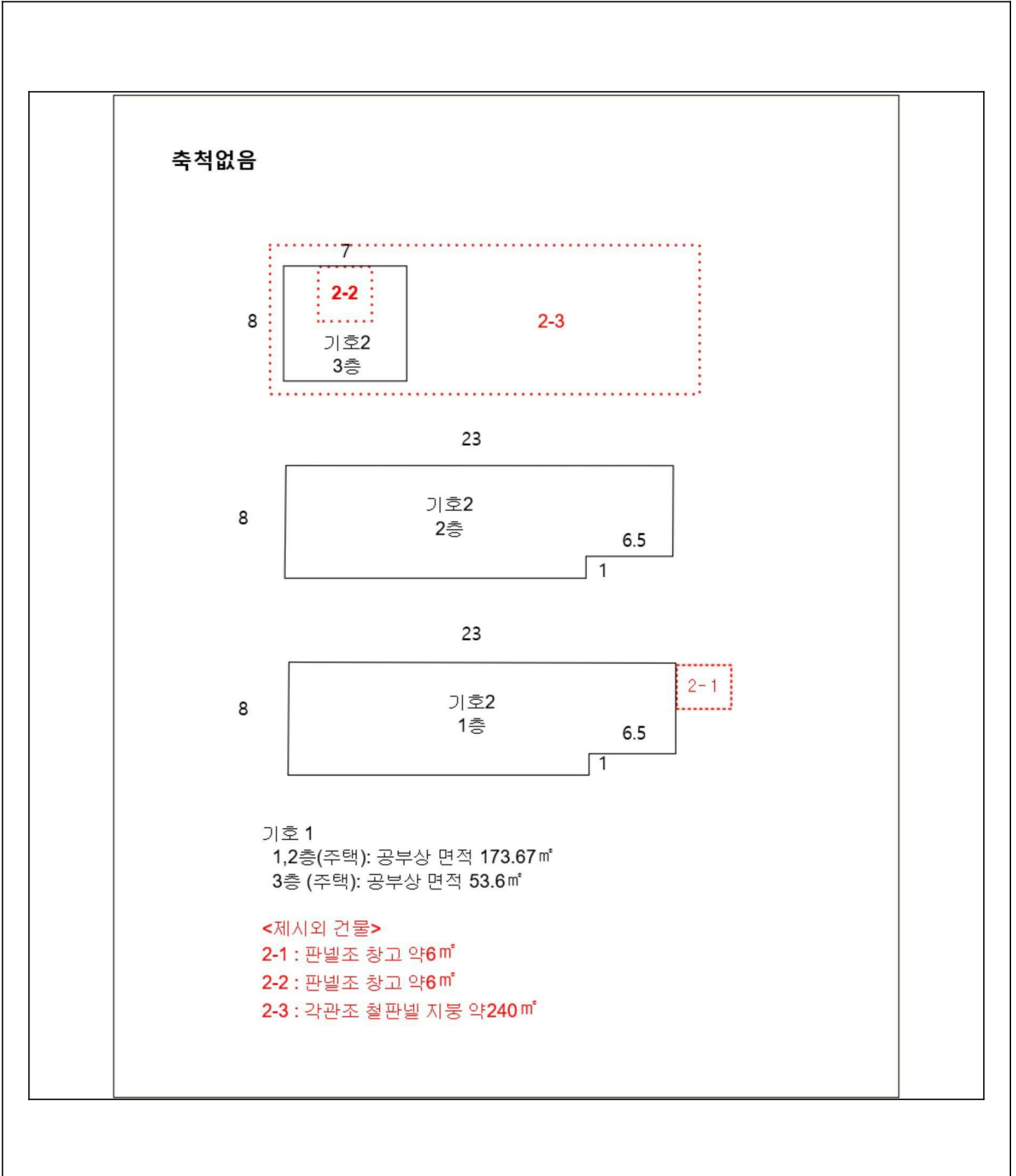
- | | | |
|--------------|-------------|------------------------|
| (1) 건물의 구조 | (2) 이용상태 | (3) 설비내역 |
|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가. 임대관계는 이상임.
나. 본건 건물의 각층에 소재하는 징크판넬 및 샷시조 창호의 비가림막 시설들은 건물의 부합물로 보아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다. 본건 건물 1층은 천장쪽 누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바람.

지 적 도



건물개황도





1, 2



1, 2



1, 2



2



2



2 1



2 2



2 2



2 3



2 3



2 3



1 101 ()



1 104 ()



1 105 ()



2-1



2-2

2-4



2-3



2-3